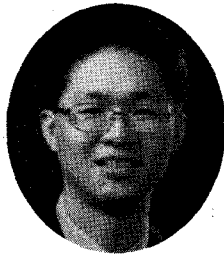


제1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의 결과와 향후의 대응방향



최 용 재 /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¹⁾

1. 포럼의 형성 및 준비과정

포럼의 형성

규제와 사업기능의 분리, 경쟁체제의 활성화 등 전기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ITU 회원국들간에 통신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포럼의 필요성이 ITU내에서 제기되었으며 제14차 교도 전권위원회회의('94. 9. 19 - 10. 14)에서 통신정책 및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이하 포럼)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차기 전권위원회회의('98년 미국) 개최전까지 1~2회의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포럼에서의 결의사항이 강

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포럼에서의 논의를 위한 보고서와 포럼의 의견(opinion)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95 ITU 이사회에서 제1차 포럼을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직후('96. 10. 21 - 10. 23)에 열기로 하였으며 포럼의 주제로 GMPCS를 선정하고 다음을 논의 의제로 결정하였다.

- 의제 1: GMPCS의 도입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글로벌화와 국제협력의 범위
- 의제 2: 저개발국 및 소외지역에서의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GMPCS의 역할
- 의제 3: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조치
- 의제 4: 상호접속 등 규제 및 정책 이슈

1) 이 보고서는 포럼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과 ITU 포럼에 같이 참석하신 한국 대표단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며 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고서상의 오류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며, 보고서의 내용 중 특히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정보통신부나 포럼의 준비반원에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ITU 제3회 규제 Colloquium 개최 ('94. 11. 9 - 11. 11, 제네바)

Colloquium에 제출된 Michael Tyler(Putnam, Hayes & Bartlett)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GMPCS 사업자의 목표와 통신정책에 대한 주권의 유지, 주파수 자원의 국가간 공평한(equitable) 이용, 자국 사업자의 사업기회 확보 등과 같은 각국 규제자의 목표사이에 어떠한 분야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3 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1에서는 GMPCS를 음성, 데이터, 팩스, 페이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big LEO"로 정의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MPCS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part 2에서는 다음의 6가지 GMPCS의 도입과 관련된 규제이슈에 대하여 현재의 규제제도의 현황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1)주파수 관리 2)위성체, 관문국, 단말기 및 서비스 허가 3)기존 망에 대한 접속 및 이윤의 배분 문제 4)비차별적인 GMPCS망에의 접속과 시장경쟁 5)표준 6)번호. 마지막으로 part 3에서는 이러한 규제이슈들이 현재의 규제들과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협력의 6가지 가능한 방식(scenario)를 제시하고 몇개 국가의 그룹내에서 국가간에 허가사항을 상호인증하는 방식으로 국제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8회 세계전기통신 자문위원회의
(WTAC, World Telecommunication Advisory Council) 개최('96. 1. 19, 하와이)

WTAC에서는 ITU 사무총장의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WTAC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GMPCS 규제정책에 관한 일반원칙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원칙으로는 다음의 11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국가의 주권(sov-
erign rights),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global coverage), 경쟁적 서비스의 제공(competitive basis), 규제의 범위(scope of regulation), 해당 정부의 승인의 필요성(prior agreement), 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국가별 차이 금지(non-discriminatory access), 위성 시스템에 대한 자본참여 배제 금지(equity participation in the space segment), 단말기 이동을 위한 허가방식(user terminals), 사업허가의 조건(licensing of services and gateways), 규제의 투명성(transparency), 글로벌 로밍의 촉진(global roaming). 특히, 단말기 이동과 관련하여 포럼 이전에 단말기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포럼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는 주파수 배분방식, 기술표준, 상호접속 및 번호체계를 제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ITU정책 포럼 준비회의

포럼을 위한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차원의 포럼 준비회의가 싱가포르에서 '96. 6. 4 ~ 5 양일간 열렸다. 이 회의는 포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포럼을 준비하는 APT 회원국들을 지원하며, GMPCS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TU사무총장인 Dr. Tarjanne는 개회사에서 GMPCS의 개념을 Colloquium에서 정의한 소위 "big LEO"에서 기존의 big LEO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제이슈를 포함하는 타위성시스템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범세계적(global)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역적(regional)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하며 GEO MSS, Little LEO, GEO/NGEO FSS 등 국경간 공급의 형태를 띠는 모든 위성시스템까지 확대하여 포럼의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국가(주로 개도국 내지는 저개발국가들이 많다)들은 GMPCS 운영자는 GMPCS 서비스가 개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는 GMPCS가 전세계의 각국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사업화가 되는 만큼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GMPCS 사업자와 규제자 모두 노력해야 하며 기술이전 등이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은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 말미에 포럼을 준비하고 GMPCS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APT내에 GMPCS 연구반(working group)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Niue, 파푸아니기니아, 싱가포르가 참여할 뜻을 나타냈으며 싱가포르가 연구반의 의장을 맡기로 하였다. 연구반은 서신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고 포럼이 개최되기 직전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비공식회의(96. 워싱턴)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부 대표 및 사업자 대표가 만난 수차례의 비공식회의가 있었는데 글로벌 로밍,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 및 위성체의 허가가 주요 논의 주제였다. 특히 각국의 규제자들이 시스템을 허가하고 단말기 이동에 대한 규제제도를 수립하는데 지침

(guideline)이 될 수 있도록 양해각서(안)(draf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작성하여 포럼에서 논의자는 모로코와 영국의 제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미국 국무성의 포럼준비반(ad hoc group on the policy forum)이 사업자들에게 포럼에 관련하여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양해각서는 각국의 규제자가 단말기의 이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며 표준적인 MOU를 작성하여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여, 개별 정부와 협상을 하므로써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찬성의 의견과 함께 포럼 이후 전담 작업반이 결성되어 MOU 작성을 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제안은 GMPCS의 허가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표출되었다.

ITU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의 보고서

ITU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포럼에서 논의될 유일한 공식자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포럼에서의 논의결과를 의견(opinion)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로 5가지의 의견(안)(draft opinions)을 제시되었고 특히, 의견 2에는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양해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GMPCS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원칙이 열거되어 있는데 대체로 WTAC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포함되었다.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포럼의 논의과정에서 다소 수정되었으나 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준비사항

금년도 초부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

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준비반이 운영되어 왔으며 포럼 후에도 양해각서의 수정과 양해각서에 기초한 국제간 협정체결의 준비작업을 위해 계속 활동중이다. 주로, ITU 규제 Colloquium에 제출된 보고서, ITU 사무총장의 포럼을 위한 보고서 및 각국의 기고문 등을 검토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GMPCS 관련 제이슈에 대한 입장을 수립하는데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기존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6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T 정책포럼 준비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96. 9월에는 ITU에 우리나라의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2. 포럼의 개관

제1차 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의 CICG 건물에서 '96. 10. 21 ~ 23동안 진행되었으며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월 20일에는 예비회의(Pre-WTPF Information Session)가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128개 회원국의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GMPCS 사업자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박영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연구기관, 기업체로부터 11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다.

예비회의의 의장은 ITU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인 Dr. Henry Chasia가 맡았는데 GMPCS 시스템별로 사업자들에 의한 시스템 소개가 있었으며 포럼에서 논의될 의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입장벽의 완화와 단말기의 글로벌 로밍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예비회의의 타인지 활발한 논의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단지 패널토론에서 후진국들은 요금의 수준과 통신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서 GMPCS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 패널의 주제와는

연관성이 적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스템 운영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본 회의의 첫째날인 10월 21일에는 ITU 사무총장이 포럼의 목적이 규제자와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GMPCS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요지의 개회사를 하였고 인도네시아 차관인 Mr. Jonathan Parapak을 포럼의장으로 지명하였으며 회의진행절차(rules of procedure)를 승인하였다. ITU 사무총장은 각국의 기고서 등을 기초로 작성된 보고서(Policy and Regulatory Issues Raised by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를 발표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포럼에서 달성해야 한다는데에 기고서를 제출한 국가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첫째, GMPCS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립하고 GMPCS의 실현을 통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각국의 정책입안자와 규제자 및 시스템 운영자(system operator)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수용가능한 원칙(voluntary principles)을 제시한다. 셋째,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자발적인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포럼의 의견(Opinion)을 작성한다.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GMPCS의 도입으로 발생할 규제이슈에 대한 4명의 기초연설이 있었다. 첫번째 기초연설자로 나선 ITU Regulatory Colloquia의 의장인 Mr. David Leive는 GMPCS의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자와 사업자간에 사업의 실현과 관련하여 조속한 상호합의를 도출하고 규제기관간의 자발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발적인 원칙의 제시,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개도국 이해의 적극적 반영 및 ITU의 역할 정립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란의 장관(Minister of Posts, Telegraph and Tele-

phone)인 Mr. Mohammed Gharazi는 GMPCS가 개도국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통신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요금, 개별 국가의 주권존중과 통신보안을 위한 통제권의 확보, 개도국의 기술증진, GMPCS 운영과 개발에 회원국의 참여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Satellite Phone사의 사장인 Mr. Kazuo Yosida는 단말기 이동과 관련하여 규제자들은 외국에서 형식승인을 거친 단말기를 인증해 주어야 하며 형식승인과 무선국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업자들로서는 서비스 미허가지역에서 서비스제공을 금지하고 통화량자료를 공개하는 등 규제 및 정책수립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호인증과정에서 ITU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기조연설자로 나선 Morocco의 Mr. Abderrazak Berrada는 포럼의 배경 및 보고서 준비과정 등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포럼의제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가 있었다. 의제 1(GMPCS의 도입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글로벌화와 국제협력의 범위)에 대한 토의에서 한국은 GMPCS의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 밖에 프랑스는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양해각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말리는 단말기 이동과 관련한 양해각서는 후진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지적을 하였고 스페인은 GMPCS의 허가는 국가 주권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

의제 2(저개발국 및 소외지역에서의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GMPCS의 역할)와 의제 4(상호접속 등 규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띤 의견의 개진이 없었다.

의제 3(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단말기의 형식승인을 상호인증하기 위해서는

ITU가 광범위한 표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GMPCS서비스가 전세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쟁촉진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공급에 있어서도 경쟁이 촉진되어 저렴한 서비스 요금과 함께 저렴하게 단말기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밝힌 후 구체적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단말기의 기술적인 조건을 개방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이전료를 부과하여 단말기 생산의 독점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괄적 허가(blanket license) 등 유연한 단말기 면허제도를 지지하지만, 여전히 면허권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멕시코는 단말기의 국경간 사용을 지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저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나미비아의 대표들은 개도국에 돌아갈 혜택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 캐나다는 WTO협상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태국은 관세문제는 통신주관청의 소관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CEPT는 EU 국가간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진행중임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draft opinion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미국, 이리툼, 이태리, 멕시코 등은 draft opinion에 지지발언을 하였고 아프리카 지역 대표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10월 22일에는 포럼의 의견(안)(draft opinion)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논의가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양해각서의 작성에 관련된 draft opinion 4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draft opinion의 논의 중에도 단말기의 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다.

우선,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은 GMPCS의 글로벌 서비스제공의 실현을 통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

요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

- 1)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른 단말기의 형식승인
- 2) 포괄적 단말기의 허가절차(blanket licensing)
- 3) 합리적 수준의 면허료
- 4) 형식승인의 상호인증
- 5) 관세부과의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관세 부과

이에 대해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등은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항이 draft opinion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핀란드는 단말기나 관문국 장비 생산에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독일, 포르투갈, 일본, 프랑스는 핀란드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제안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통가 등의 양해각서를 포함한 draft opinion 4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언과 양해각서 채택을 지지한다는 영국, 멕시코, BT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통신보안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러시아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마지막날인 10월 23일에는 포럼의 결과물인 의견(Opinion)을 채택하고 포럼을 마쳤는데 역시 양해각서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레바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은 양해각서를 채택되 이것은 단지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반면, 중국, 인디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통가 등은 여전히 양해각서를 포함한 의견 4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튀니지아, 세네갈,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기한 통화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것이었다. 즉, 관문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관문국 운영자는 서비스제공지역의 규제자가 요청할 경우 통화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불법사용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고 버텼다. 의견조정이 쉽지 않자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기간 동안 상호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기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통화량 정보 제공을 제공한다는 선에서 합의문안이 작성되어 양해각서의 제6조에 포함하기로 합의되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사업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각국의 규제자를 설득하여 GMPCS에 대한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의 부과나 단말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조치 등을 통하여 GMPCS 사업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시스템의 공개나 기술이전 및 통화량 정보의 제공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후진국은 GMPCS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으며 그 밖에 보안문제, 서비스의 영속성, 기존의 국제통화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GMPCS사업에 이미 자본참여를 하였고 관문국을 유치하였으며 일부 해외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GMPCS의 실현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기술이전의 촉구하는 등 시스템 운영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양면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포럼의 의견(Opinion)은 구속력이 없으며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강조하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발언도 있었다.

그 밖에 정회중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위성을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인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각국 대표들에게 열심히 선전하였으며 앞으로의 위성통신의 발전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3. 포럼의 결과 : 5 의견(Opinions)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ITU 이사회에서 4가지의 포럼의제를 선정하였으나 포럼의 결과물은 5개의 의견(Opin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체로 기존의 4가지 의제는 5개의 의견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으며, 다만 의제 4 즉, 상호접속 등을 포함한 규제이슈는 의견 2에 제시된 일반적인 제원칙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5개의 의견 중에는 규제자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10개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말기 이동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포함된 점이 4가지 의제에서 논의된 사항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포럼의 결과물인 5개 의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

의견 1: 통신의 글로벌화와 GMPCS의 역할

GMPCS시스템은 통신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체적인 기반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신규 고용창출 및 하이테크 기술이전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구매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GMPCS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금수준이 저렴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상이한 통신기반구조 및 규제환경을 가진 국가간의 총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들 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ITU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각국의 규제기관, 시스템 운용자 및 사용자들의 ITU의 조정역할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사무총장은 GMPCS시스템의 운용과 도입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청한다.

의견 2: GMPCS에 대한 공통의 인식 및 제원칙

GMPCS가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시각속에서 ITU의 헌장, 협약 및 관련 원칙에 부합되게 GMPCS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GMPCS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해 비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GMPCS서비스를 규제하는 각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GMPCS는 시스템별로 개발 및 실행일정이 다양하며 또한 각국의 규제기관들이 GMPCS에 대해 상이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GMPCS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원칙을 채택하여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이 GMPCS시스템에 대해 허가할 때, 그리고 GMPCS시스템 운용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GMPCS시스템을 운용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원칙 1 - 조기도입

해당국가의 법제와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및 통신보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GMPCS 서비스의 조기도입을 촉진한다.

원칙 2 - 국제협력

GMPCS의 편익을 전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 주파수 조정, 개도국에 대한 제휴 및 원조 등을 통하여 각국의 규제정책의 조화(harmonization)가 달성되어야 함

원칙 3 - 범세계적인 서비스의 제공

간소화된 규제 및 법률에 의해 범세계적인 GMPCS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정책담당자는 GMPCS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GMPCS 시스템 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가 특정 국가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4 - GMPCS 규제

각국의 규제기관은 시의적절하게 GMPCS에 대한 비차별적이고도 투명한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주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 장비공급에 경쟁체제가 성립되어 GMPCS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원칙 5 - 투자참여

GMPCS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여러나라의 지분참여를 통해 범세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분참여 국가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않된다.

원칙 6 - 불법사용

GMPCS시스템 운용자는 GMPCS서비스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불법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원칙 7 -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

단말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단말기 허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

원칙 8 - 보편적 접속

개도국이나 원격지에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GMPCS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전송(transport) 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GMPCS 사업에 그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원칙 9 - 상호접속

각국의 정책담당자, 규제기관 및 GMPCS운영자는 공정한 GMPCS서비스의 제공, 이윤 재고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GMPCS시스템간 및 GMPCS시스템과 각국의 공중망간의 적절한 상호접속을 보장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원칙 10 - 협력강화

각국의 정책담당자, 규제기관 및 GMPCS운영자는 GMPCS 사업의 완전한 실현과 관련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한다.

의견 3: GMPCS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ITU의 연구분야

GMPCS를 WARC-92 및 WRC-95에서 결정된 주요 규제조항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범세계적 혹은 지역적 기반으로 도입하기 위해 ITU의 세 분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하도록 촉구하며 ITU활동에 각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ITU-R: GMPCS 시스템간 그리고 GMPCS 시스템과 다른 무선통신서비스와의 호환성
- ITU-T: 각기 다른 GMPCS시스템에 대한 공통적인 기술표준 문제
- ITU-D: 개도국에서의 GMPCS에 대한 접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자국내 통신망에 GMPCS를 도입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의견 4: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양해각서의 작성

GMPCS가 범세계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제약없이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GMPCS의 서비스 도입 시기를 감안하면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제간의 협조 및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해 GMPCS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GMPCS 양해각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신중한 검토를 위해 ITU 사무총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며 97년 7월 1일까지 기본 협정에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 96. 12. 31까지 양해각서 초안을 각 관련당사자(주관청, GMPCS운영자, 서비스 제공업자, 설비업자, ITU 각 분과의 회원)에게 회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 97년 초에 각국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관련당사자들로 구성된 "informal group" 회의를 개최
- GMPCS의 관련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양해각서 개정안을 회람
- 97년 상반기에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협정체결을 시작하도록 GMPCS 양해각서 제1차 서명회를 주최
- GMPCS 양해각서의 수탁관리자로서 활동하고 갱신된 서명자의 명부를 주기적으로 배포

양해각서는 서명자들이 포럼에서 채택된 GMPCS의 자발적 원칙을 고려하여 그들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 아래의 6조항에 협력할 것을 동의한다. 각 주관청은 단말기의 형식승인 및 허가를 상호인증하고 단말기상의 표식을 인증하며, 그리고 단말기가 해당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제1조 단말기의 형식승인

각 서명자는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이 상호인식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수립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에 필요한 표준은 관

련 ITU 권고안을 기초로 해야 하며, 모든 GMPCS 기술과 관련하여 공평해야 하며 서비스 표준의 품질 또는 성능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제2조 단말기에 대한 허가

각 주관청은 면허가 일괄면허방식에 의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협정에는 일괄면허방식을 상호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 및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단말기상의 표식(Marking)

각 서명자는 형식승인과 허가에 대한 상호인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말기상의 표식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 관세협정

각 서명자는 사용자가 자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이용자의 단말기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단말기에 대해 부여하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권고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5조 수정보완

각 서명자는 주기적으로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의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작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주관청은 그들의 협력 정도에 대해 개선을 고려하거나, 협정이나 GMPCS 양해각서의 범위를 개선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해야 한다.

제6조 통화량 자료의 이용

각 주관청은 GMPCS 운영자가 관련 주관청에 요청이 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당국내의 발신통화 또는 해당국을 라우팅하는 통화자료를 제공하고 불법통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 5: 개도국에서의 GMPCS의 실현

GMPCS시스템이 통신기반이 부족한 개도국에 고도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통신부문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GMPCS시스템이 전세계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도국에서 GMPCS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GMPCS시스템 운영자, 관문국 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개도국의 경제상황과 서비스 공급비용을 고려하여 그들의 접속비용과 이용요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고, 특히 시스템 운영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부 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관문국 운영자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전송(transport) 요금 제공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GMPCS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개도국이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GMPCS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술적 및 규제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개도국에 GMPCS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을 연구하는 개도국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도록 전기통신개발국(BDT) 및 다른 Bureaus의 국장에 권고한다. 또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수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차기 전기통신개발회의(WTDC)에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권고한다.

4. 향후의 대응방향

향후 일정

ITU는 각국에 보낸 11월 13일자 서신에서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 및 단말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국가간의 협정체결을 비롯한 향후 조치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96. 12. 31 - 양해각서에 대한 의견 제출
- '97. 02. 14 - 양해각서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제1차 서명자 및 서명희망자 모임을 갖고 양해각서에 따라 국가간 협의 개시 양해각서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비공식 그룹회의를 통해 양해각서를 수정
- '97. 03. 09 - 양해각서가 수정되는 경우, 제1차 서명자 및 서명희망자 모임 개최
- '97. 07. 01 - 양해각서에 따른 초기 국가간 협정체결 완료

양해각서 및 단말기 이동관련 정책 방향

원칙적으로 단말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은 GMPCS가 글로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증은 양자간 협의방식(bilateral agreement)보다는 다자간 협의방식(multilateral)을 통해 도출하는 경우 개별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절약된 비용의 대부분이 특정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한한 모든 국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자, 사업자, 제조업체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단말기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 양해각서 및 그에 따른 국가간 협정체결에 의해 자유로운 단말기 이동이 실현되면, 그 기업이 생산한 단말기가 상대국의 관세나 형식승인, 허가의 장벽을 넘어 전세계를 넘나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상호인증이 아니고 다수 국가에 의한 단말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소속된 극소수 국가의 형식승인의 일방적 인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해악은 독점 내지는 소수의 과점적 단말기 제조업체는 양해각서의 이행 즉, 단말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단말기의 수요 증대에 대해 충분한 공급의 증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단말기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때 공급이 일정량 증대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증대량은 단말기가 경쟁적으로 생산될 때 증가하는 양보다는 작다.)으로 대응할 것이며 따라서 국제협력의 결과 소수의 단말기 제조업체만 주로 혜택을 얻게 된다. 글로벌 규제자가 존

재한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양해각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말기가 경쟁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프랑스, 일본, 핀란드 등의 국가와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양해각서에 이은 형식승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정을 대비하여 국내 기술진에 의한 형식승인에 포함될 기술적인 기준 마련 작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자간 협정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모아지는 경우, 형식승인(안)이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한 표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